

## 제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2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 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 542 조의 4 및 회사 정관 제 23 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7년 3월 24일 (금요일) 오전 9시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안랩 지하 1층 대회의실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 : 영업보고, 감사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나. 부의안건 (별첨 참고)

제 1 호 의안 : 제 22 기(2016.1.1 ~ 2016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※ 1 주당 예정배당금 : 700 원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- 이사 권치중

제 4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

5. 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, 인감 날인, 인감증명서), 대리인신분증

7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: [<http://evote.ksd.or.kr>]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7년 3월 14일 ~ 2017년 3월 23일
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
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

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
라. 수정동의안 처리

-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※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들에 대해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3월 9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

주식회사 안랩

대표이사 권 치 중 (직인생략)

별첨

1. 제 1호 의안 - 제 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2. 제 2호 의안 -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2조(목적)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15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</p>	<p>제 2조(목적)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15. <u>학술, 연구용역의 수탁 및 자문</u></p> <p>16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</p>	<p>사업목적 추가</p>
<p>제 18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<u>제 18 조(사채의 발행)</u></p> <p><u>1.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일반사채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2.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개정상법 반영</p>
<p>제 18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 19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1.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(<u>제18조 제2항</u>에 의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<u>본조 및 제19조의2</u>에서 "이사회 결의"라고 함)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/u></p>	<p>개정상법 반영 및 조문이동</p>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19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 19조의 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/u></p>	<p>개정상법 반영</p> <p>및 조문이동</p>
<p>제 29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</p> <p>1.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 29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</p> <p>1.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</u>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개정상법 반영</p>
<p><b>제 31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p>	<p><b>제 31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<u>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</u>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<u>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</u>을 정한 경우에 그 <u>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</u>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p>	<p>개정상법 반영</p>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35 조(이사의 임기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(이하 생략)</p> <p>3.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 35 조(이사의 임기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법령</u> 또는 정관에 정한 (이하 생략)</p> <p>3. <u>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4.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	<p>문구수정 및 개정상법 반영</p>
<p>제 37 조(이사의 의무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 37 조(이사의 의무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<u>재임기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</u>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개정상법 반영</p>
<p>제42조 (위원회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감사위원회</u>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42조 (위원회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각</u>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	<p>문구수정</p>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1. ~ 4. (생략) 5.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6. (생략)	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1. ~ 4. (생략) 5.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 6. (삭제)	중복항목 정리
제 46 조(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) 1.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2. (생략)	제 46 조(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) 1.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u> 2. (생략)	중복항목 정리
	[부 칙]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	

### 3. 제 3호 의안 - 이사 선임의 건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권치중	안랩 대표이사	한국 IBM SGI코리아 대표이사 KT FDS 대표이사	없음

### 4. 제 4호 의안 -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① 전기(제22기) 이사보수 한도액 : 1,000백만원
- ② 당기(제23기) 이사보수 한도액 : 1,000백만원